

귀하는 압류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의 통지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___일자로, 귀하의 주택 용자는 ___일 동안, ___ 달러의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됩니다.

뉴욕 주 법률에 따라, 당국은 귀하가 주택을 잃을 위험에 놓여 있음을 알리는 본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정부 승인 주택 상담 기관의 목록이 본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지역에 있는 무료 주택 상담 서비스에 연락하기 위해 뉴욕 주 법무국장 산하 주택 소유자 보호 프로그램(Homeowner Protection Program, HOPP)의 무료 고객 핫라인 1-855-HOME-456(1-855-466-345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해당 웹사이트 <http://www.aghomehelp.com/>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카운티별 주 전체 목록은

http://www.dfs.ny.gov/consumer/mortg_nys_np_counseling_agencies.htm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무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회사 또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위의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뉴욕 기반 기관의 주택 상담사는 모기지론 상환에 문제가 있는 주택 소유주를 돕기 위해 교육을 받았으며, 귀하의 상황을 해결하는 최상의 옵션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_____에서 저희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으며 가능한 옵션을 논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 만족하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해결을 추구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적어집니다.

본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하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 저희는 귀하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또는 귀하가 주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뉴욕 주 금융 서비스국(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헬프 라인의 무료 전화 (800) 342-3736번으로 연락하시거나, 당국의 웹사이트 www.dfs.ny.gov를 방문하십시오.

중요 정보: 귀하는 법원에서 주택 퇴거 명령을 받을 때까지 귀하의 부동산에 남아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압류 절차가 법원에 제기될 경우에도 법원이 퇴거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귀하는 귀하의 주택에 남아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 또는 법원의 압류 절차의 결과에 의해 부동산이 매도될 때까지 부동산의 소유주로 남아 있으며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본 통지는 퇴거 통지가 아니며, 귀하에 대한 압류 절차가 아직 개시되지 않았습니다.